

마포구 노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

마포구 노상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화재·안전사고 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
의 설치·운영 제한),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
견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
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마포구
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8월 20일

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



1. 사 업 명 : 마포구 노상주차장 CCTV 설치
2. 시 행 자 : 마포구시설관리공단(공영주차팀)
3. 행정예고 기간 : 2019. 8. 20. ~ 2019. 9. 9. (20일간)
4. 의견제출 기간 : 2019. 8. 20. ~ 2019. 9. 9. (20일간)
5. 공고방법 :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mfmc.or.kr>)
6. 설치예정시기 : 2019. 9월 중
7.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
 - 설치장소 : 마포구 공영주차장 일대(11개 주차부스 인근)
 - 설치대수 : CCTV 44개





- 촬영범위 : 홍대 공영주차장(마포구 어울마당로 32~50) : 32대
 망원 노외주차장(마포구 월드컵로 131) : 4대
 동교 노외주차장(마포구 와우산로 29길) : 4대
 신촌 공영주차장(마포구 신촌로 16길 24~ 84) : 4대

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
8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9.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(개인정보) 관리 및 처리에 관한사항

-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
-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
- 화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
-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
- 영상저장 기간 : 20일 이내
- 관제장소 :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및 주차부스 내

10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사무실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- 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주민번호 등
- 다. 기타 필요사항 등
- 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 - 주 소 : (우)039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(성산동)
마포구시설관리공단 2층 공영주차팀
 - 전 화 : 02) 300-5056
 - 팩 스 : 02) 304-5332
- 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